



# 국경에서의 인권 에 관한 권장원칙 및 지침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 국경에서의 인권 관련 권장원칙 및 지침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 추천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국경에서의 인권에 관한 권장 원칙 및 지침'은 국경 관리에 관한 규범적 지침을 마련하고자 광범위한 전문가 협의를 거친 결과물입니다. 인권에 기반한 국경 관리에 관심이 있는 국가, 국제기구 및 이해당사자들의 업무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권장원칙과 지침은 2014년 개최한 제69차 총회에 제출된 '이주자 보호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총회 보고서(A/69/277)'에 수반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회원국들은 '이주자 보호 및 이주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총회 결의안의 원칙과 지침'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국경은 이주자, 특히 비정규적 상황에 처한 (혹은 그럴 것으로 여겨지는) 이주자에게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주자들이 항해에 적합하지 않은 배에 탑승하거나, 밀입국 중개인들이 그들을 바다에서 죽게 내버려 두는 상황에 처하거나 혹은 비정규적 이주를 저지할 목적으로 국경 수비대가 "발견 즉시 발포"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계 육지, 바다, 상공의 모든 국경에서 이주자들은 차별 및 자의적 결정, 불법적인 정보수집과 사생활 권리에 대한 부적절한 간섭, 고문과 성적/성별 기반 폭력, 위험한 차단 관행, 그리고 장기적 혹은 자의적 구금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국내법 및 행정법규는 국경을 인권 의무에서 제외 혹은 예외 영역으로 특징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내법이 내포하고 있는 인권 보호 장치, 견제 및 균형의 준수에서 국경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국경에서의 인권에 관한 권장 원칙 및 지침'은 그 밖의 다른 다양한 인권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칙과 지침의 기본 전제는 이주자의 법적 지위, 어떻게 그들이 국경에 도착했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모습인지에 관계없이, 국제 인권법이 이주자들에게 그들의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문에서 명확히 알 수 있듯, "이들 원칙과 지침을 뒷받침하는 것은 그들의 국적, 이주 상태 또는 그 밖의 상황과 관계없이 이주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효과적인 국경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믿음입니다."

저는 국가,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단체가 그들의 국경 관리 노력에 이 원칙 및 지침을 적용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유



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 머리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국경에서의 인권에 관한 권장원칙 및 지침은 세가지 권장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모두는 국제 인권법에서 파생되었고, 국경에서 모든 이주자의 인권 보호, 존중 및 이행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인권의 최우선:** 인권은 모든 국경 관리 대책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B. 비차별:** 국경에서 이주자들은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C. 위험 상황으로부터의 보호 및 지원:** 국경에서 국가는 모든 이주자의 개별 상황을 고려하고, 효과적인 보호와 사법적 접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이주의 상태 혹은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특히 아동의 최대 이익이 국경에서의 모든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고려사항임을 강조합니다.

다음의 10가지 권장 지침은 국경에서의 인권역량강화, 구조 및 차단상황에서 인권보장, 심사, 구금 방지 및

인권기반의 송환 및 강제출국 실현과 같은 과제들을 달성함에 있어 실질적인 방법으로 국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각 지침은 중요 의제로 책임성을 다루고 있으며, 국경에 독립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이주자들이 효과적인 구제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다소 복잡하지만 상당히 세세한 부분까지 국경과 관련되어 있는 인권 쟁점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인권의 증진 및 보호**와 관련하여, **지침 1**은 인식 캠페인과 언론보도를 활용하는 관련 정부부처와 다른 행위자들에게 국경에서 이주자를 보호하고 외국인 혐오에 대항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정규적 상황에 처한 이주자를 지칭하는데 “불법”이란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적 및 정책적 체계**에 관한 **지침 2**는 이주자의 비정규적 입국이 범법 행위로 간주되지 않고 곤경에 처한 이주자를 구조하는 개인의 행위가 범죄로 간주되지 않을 것을 국가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경에서 무력의 과도한 사용, 범죄 및 부패에 대해서 적절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권 역량 강화**에

관하여, **지침 3**에서는 국경업무 담당자들이 적절한 훈련을 받고, 장비를 갖추며 합당한 보수를 지급받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경당국을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동 강령을 개발하고 채택해야만 합니다.

**지침 4**는 **구조 및 차단 조치**에서 인권 기준 및 보호 장치가 포함될 것을 촉구하고, 위험한 이주경로를 따라 구조 신호를 제공해야 하며, 이주자 구조 때문에 재정적 손해를 입은 선장에게 보상해주는 것과 같이 실질적 조치를 권장합니다. 이 지침은 사전 출국 심사와 같은 입국 제한 조치 시행과 관련된 민간 운송 회사의 책임을 설정합니다. **지침 5**는 의료, 적절한 음식과 음료, 담요, 의복, 위생용품 및 휴식을 취할 기회와 같은 **즉각적인 지원** 맥락에서의 인권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모든 이주자가, 적절한 경우 정신 건강 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심사 및 인터뷰** 내용으로 **지침 6**은 심사 과정에서 개인물품에 대한 수색 및 적절한 취급과 관련하여 사생활

보호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국경에서 정보수집시(특히 생체정보) 엄격한 안전장치가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국 제한조치에서 인권을 준수해야 하며, 이주 정책의 일환으로 HIV, 결핵, 임신과 같은 조건에 대한 강제적 검사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 지침은 국가가 여성(단, 국경업무 담당자가 여성은 취약하거나 주체성이 부족하다고 추정하는 것을 못 하도록 보장해야 함), 장애가 있는 이주자, 성 소수 이주자 및 아동의 상황에 대한 심사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침 7**은 **식별 및 (전문가 조력, 지원 시설 등) 위탁**을 언급하고 있는데, 관련된 실용적인 지침 및 표준화된 절차를 개발하도록 국가를 장려하고, 관련 서비스 제공자가 국경에 있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서는 아동을 신속히 식별해야 하고 아동이라고 주장하는 이는 누구나 아동으로 처우해야 하며 적절한 연령 판단 절차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문, 폭력 및 정신적 피해로부터의 생존자는 의료 및 심리 서비스

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국경에서 행해지는 모든 조치에서 정신적 재-외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지침 8**은 국가에게 **구금을 반대하는 법률적 추정**을 확립하고, 인권에 기반한 구금의 대안이 법적으로 규정되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금이 필요하다고 밝혀진 경우, 이주자가 구금될 구금 시설의 조건은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그곳에는 국가 예방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독립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존재해야 합니다. 구금된 이주자는 적절한 공간에서 그들의 영사관 담당자 및 관련 인권활동가들과 접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침 9**에서 **송환 혹은 추방**은 강제 송환금지 원칙 그리고/혹은 집단추방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발적 귀환 절차에 대한 모든 동의 과정에서 위협 혹은 무기한 구금의 가능성 같은 어떤 강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주자들은 국경 사이의 소위 “무인지대(또는 중간지대, no-man’s land)” 로 추방되는 것과 같이 그들의 안전 혹은 인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궁핍한 상황이나 열악한 환경으

로 송환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제 송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주자의 인권이 위태로워진 경우, 이 지침에서는 송환 절차는 완료되지 않고,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송환 절차 도중 이주자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주자가 항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지침 10**은 국가가 운영 협정 및 협의에 명시적 인권 보장을 포함시키고, 국제 인권법 및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선박운항협정, 합동순찰 혹은 정보 공유협정 같은 모든 협력협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인권에 기반하고, 평등하며, 위엄 있고, 법과 증거에 기반한 이주 및 국경 관리 조치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들은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 목차

		단락	페이지
	추천사		ii
	머리말		iv
<b>I.</b>	<b>서론</b>	<b>1-10</b>	<b>1</b>
	A. 국경에서의 인권	1-4	1
	B. 원칙 및 지침의 범위와 목적	5-10	3
<b>II.</b>	<b>국경에서의 인권에 관한 권장원칙</b>	<b>1-13</b>	<b>7</b>
	A. 인권의 최우선	1-7	7
	B. 비 차별	8-9	8
	C. 위험으로부터의 지원 및 보호	10-13	9
<b>III.</b>	<b>국경에서의 인권에 관한 권장 지침</b>		<b>11</b>
지침 1:	인권의 증진 및 보호	1-10	11
지침 2:	법적 및 정책적 체계	1-13	14
지침 3:	인권 역량 강화	1-19	17
지침 4:	구조 및 차단 상황에서의 인권보장	1-16	21
지침 5:	즉각적 지원 맥락에서의 인권	1-9	25
지침 6:	심사 및 인터뷰	1-18	27
지침 7:	식별 및 위탁	1-11	31
지침 8:	구금의 지양	1-20	33
지침 9:	인권 기반 송환 및 추방	1-22	37
지침 10:	협력 및 조정	1-12	42





© UN Photo/Sylvain Liechti

# I. 서론

## A. 국경에서의 인권

1. 국경은 인권 의무에 대한 배제 혹은 예외 영역이 아닙니다. 국가는 해당 국경에서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지만, 그들의 인권 의무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출입국관리, 법률 집행 및 기타 국가적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국경 관리를 수행하는 당국과 그런 조치가 행해지는 장소에 관계없이, 국경에서 모든 이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이주에 관한 담론을 보면 “동반자가 없는 혹은 홀로된 아동”, “비정규적 상황의 이주자”, “밀입국자” 혹은 “인신매매 피해자” 와 같이 이주하는 사람들을 분류하는데 사용되는 용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재 이주 흐름의 복잡한 현실에서 사람들은 동시에 여러 범주에 속하거나 혹은 여행 중에 한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바뀔 수 있어 사람들을 명료하게 범주화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국경에 접근하는 모든 개인은 각자 다른 동기를 가지는데 그들의 동기와 관계없이,

국가는 국경에서 모든 이들을 대함에 있어 국제인권법에 따른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국가는 안전을 강화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그리고 다국적 조직범죄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경 통제를 실행하는데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국제인권 체계를 실질적 국경 관리 조치로 전환하기 위해 이 권장원칙 및 지침("지침")을 준비했습니다. 이 지침은 핵심적 국제 인권조약에서 파생되었고, 모든 인권의 상호의존성 및 양도 불가함에 뿌리를 둔 인권 기반 접근을 주장하고 있으며, 권리 보유자와 의무이행자 간의 책임성을 설정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참여 및 역량강화를 강조하고, 특히 취약성, 소외 및 배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4. 더불어, 이 지침의 바탕에는 그들의 국적, 이주 지위 혹은 그 외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효과적인 국경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인식에 기반합니다. 이주를 관리하기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주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은 오히려 이주자가 겪게 되는 위험을 악화시키고, 국경에서 무법 및 무처벌의 영역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국제적으로 확인된 인권 규범을 준수하는 이주 관리적 접근은 국가가 그들의 국경을 보호하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면서, 모든 이주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추구하는 국가의 책무를 유지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지침은 국가와 모든 이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그들이 국경 관리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인권을 우선시 하는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에 그들이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 B. 원칙 및 지침의 범위와 목적

5. 국가는 국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하지만, 이 지침은 주로, 비정규적 상황에 있는 이주자를 포함하여, 국제 이주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6. 이 지침은 국제인권법 및 그 밖의 관련 규범에 따라 국경을 관리하는 의무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주로 개별 국가에 제공됩니다. 또한 이 지침은 국경 관리와 관련된 국제 기구, 시민 사회 및 민간 활동가를 포함한 그 밖의 행위주체들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7. 이 문서의 도입부에서 제시한 원칙은 국제인권법에서 파생되었으며, 개별 국가 및 국경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민간 행위자가 취한 조치, 또는 다른 국가 및 그 밖의 주체 등과 공동으로 맡은 조치 등에 기반한 모든 지침의 이행에 적용됩니다.
8. 이 지침은 국경에서 마주치게

되는 권리 보유자에 대하여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하는 인권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국가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각 지침의 이행은 서술된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9. 이 지침은 국제 인권법, 국제 인도주의법, 국제 난민법 혹은 그 밖의 관련 법률, 국내법 하에서 개인에게 부여된 권리 등에 적용된 조항을 제한, 수정 혹은 손상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sup>1</sup>

<sup>1</sup> 권위 있는 지침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본 지침은 국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식별, 강제송환에 대한 보호, 망명절차에 대한 접근 보장 등 국경에서 "보호 필요 판단이 가능한 입국심사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의 난민 보호와 혼합 이주에 관한 10대 행동계획의 맥락을 포함하고 있는 지침과 더불어 읽혀져야 합니다. 인신매매 피해자의 경우, 본 원칙 및 지침은 특히 인권 및 인신매매에 대한 OHCHR의 권장원칙 및 지침과 함께 읽혀져야 합니다.

## 10. 본 원칙 및 지침의 목적:

- (a) '국경에서의 이주자' 라는 용어는 국경에 존재하는 모든 국제 이주자<sup>2</sup>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b) '국경' 이라는 용어는 정치적 독립체 사이의 영토 혹은 해양 영역을 구분하는 정치적으로 정의된 경계 및 정치적 독립체가 본토 혹은 영외적으로 국경 통제 조치를 행사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이런 지역은 대사관 및 영사관 뿐만 아니라 육상 검문소, 기차역, 항구 및 공항에 있는 국경 검문소, 입국 및 환승 구역, 공해 및 국경 검문소 사이의 소위 "무인지대" 가 포함됩니다).
- (c) 용어 '국경에서 특정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이주자' 에는 비정규적

---

<sup>2</sup> 본 원칙 및 지침의 취지에서, 그리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용어가 없는 경우, "국제 이주자" 는 출생 또는 상시 거주해 있는 국가 밖에 있는 모든 사람(시민, 국민, 혹은 무국적자)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이주자 및 법적 또는 등록된 방법으로 이주를 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비정규적 상황에 있는 이주자 등 이들 모두를 포함합니다.

상황에 처한 이주자, 밀입국 상황의 이주자, 인신매매 피해자 뿐만 아니라, 아동(미 보호자 아동 포함), 여성(임산부 및 신생아 그리고/혹은 모유수유 산모 포함), 성폭력 및 성별 기반 폭력 등 학대를 겪은 사람,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굴욕적인 대우의 피해자, 폭력과 정신적외상 피해자, 장애인, 노인, 무국적자, 토착민, 소수민족, HIV 혹은 특정 건강이 염려되는 사람, 그리고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간성 등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정치적 반체제 등도 포함됩니다.

- (d) '국경업무 담당자' 라는 용어는 국경 경비대, 영사, 출입국 공무원, 국경 경찰, 국경 구금 시설의 직원, 출입국 및 공항 연락 담당자, 해안 경비대 및 그 밖의 국경 최전선 공무원 및 국경 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직원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e) '국경관리' 및 '국경관리조치'

라는 용어는 국가의 영역으로부터 입국 및 출국하는 사람과 관련된 법률, 정책, 계획, 전략, 활동계획 및 실행 등에 국한되지 않고, 발견, 구조, 차단, 심사, 인터뷰, 식별, (난민)접수, 구금, 추방 혹은 송환 등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훈련, 기술, 예산 및 그 밖의 지원 등과 같이 다른 국가에

제공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f) '민간 행위자' 라는 용어는 국가를 대신해 국경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비국가적 행위자로서, 민간 운송 회사가 고용한 개인 또는 국경심사, 국경방어, 구금 같은 보안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위탁 받은 사설 회사를 포함합니다.









## II. 국경에서의 인권에 관한 권장원칙

### A. 인권의 최우선

1. 국가는 그들의 국제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국경 관리에 있어서 인권을 존중, 보호 및 이행해야 합니다.
2. 국가는 국경에서의 이주 관리 중심에 인권이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3. 국가는 영역외적으로 권한 및 통제를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관할 또는 실질적 통제를 행사하는 모든 영역에서 인권을 존중, 보호 및 이행해야 합니다. 국경 관리의 민영화로 국가의 인권 의무를 유보, 회피 및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4. 국가는 모든 국경 관리 조치에서 모든 사람들의 자국을 포함하여 어떤 국가로도 떠날 수 있는 권리와 자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가 보호 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5. 국가는 국경에서의 비정규적 이주 및 다국적 조직범죄 (이주자의 밀입국 및 인신매매 등) 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이주자의 인권 및 존엄성의 향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6. 아동 최우선의 이익은 그들 또는 부모의 이주 지위와 상관없이 국경에서 국가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아동에게 우선적 고려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이주 맥락에서 아동이 다른 무엇보다 아동으로 대우받도록 보장해야 하며, 아동 최우선의 이익 원칙이 이주 관리 목적 혹은 그 밖의 행정적 고려사항에 우선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7. 국가가 관할 혹은 실질적 통제를 행사하는 모든 지역에서 모든 이주자는 그들의 지위와 상관없이, 적법 절차에 대한 권리를 보호 및 존중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개별심사에 대한 권리, 사법적 및 실질적 구제책에 대한 권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 B. 비차별

8. 비차별 원칙은 모든 국경 관리 조치의 핵심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기타 견해, 국가적 혹은 사회적 출신배경, 재산, 출생 혹은 사회적 신분, 국적, 이주 지위, 나이, 장애, 무국적, 혼인 여부 및 가족 상황, 성적지향 혹은 성정체성, 건강 상태, 경제적 및 사회적 상황 등에 근거한 차별을 금합니다. 국경에서 이주자에 대한 차등 대우는 정당하고 균형적인 목표를 합법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특히, 비정규적 이주 문제를 처리하거나 테러, 인신매매 혹은 밀입국에 대응하는 조치는 그들의 밀입국 혹은 인신매매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된 근거를 바탕으로 이주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등과 같은 차별적 의도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9. 국가는 국경 관리 조치를 통해 국경에서 국가 및 민간 행위자에 의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방지하고 이에 대처할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 C. 위험으로부터의 지원 및 보호

10. 국가는 국경에서 모든 이주자를 차별하지 않고 보호 및 지원해야 합니다.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 및 문화적 권리를 포함한 인권 의무가 법 집행 및 이주 관리 목표보다 우선시해야 합니다.

11. 국가는 국경에서 행해지는 모든 국경 관리 조치(비정규적 이주 문제를 처리하거나 국제적 조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등)가 강제송환 금지 원칙 및 자의적 집단 추방 금지 원칙에 따라 취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12. 국가는 국경에서 모든 이주자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국경에서의 특정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이주자들에게 그들의 권리 및 요구사항을 참작한 구체적인 보호와 개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자격이 보장되도록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3. 국가는 국경 관리 조치로 인해 인권침해 혹은 남용에 고통 받는 모든 이주자들이 평등하고 효과적인 사법 접근, 실질적인 해결책에 대한 접근, 입은 피해에 대한 적절하고 실질적이며 즉각적인 보상, 그리고 침해 및 보상 메커니즘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가는 인권 침해 및 남용에 대해 조사하고, 해당되는 경우 기소하여 위법 행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형을 부과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UN Photo/OCHA/David Ohana

### III. 국경에서의 인권에 관한 권장지침

#### 지침 1: 인권 증진 및 보호

국가 및 관련 국제기구와 시민사회 단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sup>3</sup>:

##### 인권 증진

1. 인권 기반의 국경 관리 조치를 개발, 이행 및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술적 및 예산적 지원을 국가, 관련 국제기구, 정부간 조직 및 시민 사회 주체들에게 요청하거나 제공해야 합니다.
2. 낙인, 외국인 혐오, 인종 차별 및 불필요한 우려를 자아내거나 부정확한 메시지 등을 피하면서, 국경 관리에 영향을 미칠 이주 인권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고 비차별적으로 수집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sup>3</sup> 적용 가능한 국제법 그리고/혹은 관련 국내법에 따른 의무에 대한 침해 없이

언론을 지원해야 합니다. 언론 매체와 언론인은 사생활 보호 및 정보 출처의 비밀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적절한 훈련을 통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3. 국경에서 외국인 혐오, 폭력 및 차별로부터 이주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주자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한편 이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해야 합니다

4. 이주에 관한 법률, 정책 및 관행에 사용되는 용어가 국제 인권법과 기준에 일치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유엔 총회결의안 3449호(1975. 12. 9.)에 따라, '불법'이라는 용어는 비정규적 상황의 이주자를 지칭할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5. 시민 사회 단체, 언론 및 그 밖의 관련된 행위자와 협력하여 정보 캠페인을 수행하고, 특히 국경에서 이주자의 상황을 조명하며, 국경 접근 및 횡단에 관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잠재적 이주자에게 다국적 조직범죄 및 위태로운 이주에 대한 위험 정도 및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6. 국경 관련 조치의 개발, 채택, 이행 및 평가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에 사법기관, 입법기관 및 인권기구를 포함, 학계 및 시민 사회 단체, 이주자 단체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주자의 경험이 국경 관리에서 인권 영향을 이해하는데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 모니터링 및 관리 책임

7. 국경에서의 이주자 인권 및 존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행 국경 관리 조치에서 인권의 이행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다국적 조직범죄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적 이주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8. 국경업무 담당자와 경찰, 국내 인권기구, 국회의원,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 사이의 협력을 용의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경에서의 인권에 관한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장려하고 체계적인 보고 수단을 설립 혹은 강화해야 합니다. 국경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관련 행위자가 항의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합니다.

9. 보편적 정기검토(UPR)의 맥락에서, 국경에서 인권 강화를 위해 취해진 조치에 관한 상세 정보를 관련된

모든 유엔 인권조약기구 및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 절차에 제시해야 합니다.

10. 국경에서의 인권 침해에 관한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배상을 제공하며, 그런 침해와 재량 남용이 국내법 또는 국제법을 근거로 형사상 범죄에 해당될 때, 조사하고 기소하는 것을 포함한, 공식적 기구 및(혹은) 절차를 확립해야 합니다.



© UN Photo/Rick Bajomas

## 지침 2: 법적 및 정책적 체계

국가 및 관련 국제기구와 시민사회 단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sup>4</sup>

### *비차별, 보호 및 지원*

1. 국경에서의 모든 국경 관리조치와 모든 이주자와의 접촉에서 국제적 인권 기준이 존중되고, 보호되며 이행될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을 위해서 국내법과 국제 인권법을 조화시켜야 합니다.

2. 법률화 된 차별금지 조항이 국경에서의 모든 국경 관리조치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전 심사 및 사증 신청, 발행, 거부, 취소 및 갱신과 같은 사증 절차가 비차별 원칙을 포함하는 국제 인권 기준의 이행을 보증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사전 심사 및 사증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로

부터 위탁 받은 민간 행위자의 실질적 책임을 보장하는 법률을 채택 혹은 수정해야 합니다.

3. 필수적 보호 및 지원 조항을 포함하여 모든 인권의 존중, 보호 및 이행이 비정규적 이주 문제를 해결하고, 망명 절차(난민신청 포함)를 구축 혹은 운영하며, 인신매매 및 밀입국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뿐만 아니라 모든 국경 관련 법률에 명백히 포함되도록 법률을 채택 혹은 수정해야 합니다.

### *비범죄화*

4. 국경을 넘는 행위가 국가 행정의 문제임을 감안하여, 비정규적 입국, 비정규적 방법으로 입국 시도, 혹은 비정규적 체류가 범법행위로 간주되지 않도록 법률을 채택 및 수정해야 합니다. 비정규적 입국에 적용되는 행정상 제재는 비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sup>4</sup> 적용 가능한 국제법 그리고/혹은 관련 국내법에 따른 의무에 대한 침해 없이



5. 밀입국자 혹은 그 밖의 비정규적 국경 통과를 조장하는데 관련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행정적, 민사적 및 형사적 제재가 그들에 의해 행해진 범죄 행위와 인권 침해에 비례하도록 법률을 채택 혹은 수정해야 합니다.

6. 조난당한 이주자의 구조를 수행하는 선장을 포함한 개개인이 그 행위로 인한 처벌을 받거나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률을 채택 혹은 수정해야 합니다.

### 모니터링 및 관리책임

7. 국경에서 이주자를 대상으로 자행된 범죄 및 국경업무 담당자가 저지른 혹은 연루된 범죄에 대해, 투명하고 효과적이면서 비례적인 행정적, 민사적 처벌 및 해당되는 경우 형사적 처벌의 법률 조항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 범죄 행위를 보고하지 않은 국경업무 담당자에게는 적절한 제재가 가해져야 합니다.

8. 국경업무 담당자가 행사하는

권한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고 국제 인권법에 따라 법적 승인과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법률을 채택 혹은 수정해야 합니다.

9. 국경업무 담당자의 무력 사용과 총기 및 그 밖의 무기의 소지는 국제 인권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오용 혹은 과잉 사용이 적절히 제재될 수 있도록 법률을 채택 혹은 수정해야 합니다.

10. 국경에서의 무력 (치명적인 무력 포함)의 과도한 사용 및 이주자에 대한 인권침해 혹은 폭력 행위에 관하여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법률을 채택 혹은 수정해야 합니다.

11. 다국적 조직범죄에 연루 혹은 공모한 국경업무 담당자의 행위 뿐만 아니라 국경업무 담당자의 부패에 대해 수사, 기소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채택 혹은 수정해야 합니다.



12. 민간 운송 회사를 포함한 민간 행위자의 국경 관리 기능에 대한 어떤 위임도 차별금지원칙, 강제송환금지 원칙 및 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를 떠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인권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법률을 채택 혹은 수정해야 합니다. 인권이 침해된 경우, 민간 행위자의 책임과 구제 조치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도 그 법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13. 국경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폭력 및 범죄의 피해자가 그들의 이주 지위와 무관하게, 사법 절차, 인권침해 사실 보고,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절차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법적절차 및 그 밖의 메커니즘 또는 절차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 국가의 관할권 여부와 관계없이, 정의를 추구한 결과로 구금되거나 추방당하는 두려움 없이,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지침 3: 인권 역량 강화

국가 및 국제기구와 시민사회단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sup>5</sup>:

### 예산 및 시스템

1. 신원 확인, 심사 및 위탁 시스템을 포함하여 국경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충분한 국가 예산 자원을 할당하고, 국경에 도착하는 이주자를 위해 인권에 기반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2.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른 국경 관리 강화 및 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인권 기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국제 기구로부터/에 재정적, 기술적 및 그 밖의 지원을 요청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 인력 충원

3.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적절한 훈련, 역량 및 재원을 갖춘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의무화되도록 국경당국의 역할을 검토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국경당국이 국제 인권법에 따라 부여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적절하게 훈련된 인원이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투입되어야 합니다.
4. 국경 당국에 대한 채용과 배치 절차는 엄격히 실시되어야 합니다. 채용 기준은 관련 인권법 의무에 대한 지식 또는 배울 수 있는 개방성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주자의 언어로 이주자와 의사 소통하고 비차별적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역량 혹은 의지를 가진 국경업무 담당자를 채용하고 배치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5. 국경업무 담당자는 관련 위험성, 힘든 노동시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책임성 등 특수한 요소를 고려하여,

<sup>5</sup> 적용 가능한 국제법 그리고/혹은 관련 국내법에 따른 의무에 대한 침해 없이

공정한 보수를 지급받아야 하며, 적절한 의료 및 심리치료, 지원 및 상담 서비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경에서의 그들 업무로 인한 직업상의 피로, 이차 정신적 피해 및 기타 심리적 상태 징후에 대한 정기적 검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6. 국경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자격을 갖춘 직원을 충분한 인원으로 국경에 배치해야 합니다. 국경 당국은 균형 잡힌 남녀 비율로 채용 및 배치되어야 합니다 (연안 경비정 포함).

7. 의료 전문가 및 의료 종사자, 아동 보호 전문가, 동반자가 없거나 홀로된 아동의 후견인, 법률 조력자, 통역자 및 (문화)연락담당관 등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인원이 적절하게 채용되어야 합니다. 통행량이 많은 국경은 이런 인력을 상시적으로 배치시키고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대한 최신 명단을 유지하여 필요한 경우 이들이 직접 참석하거나, 즉각적 접근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화통화 또는 화상회의 같이 원격으로 참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훈련 및 역량 강화

8. 국경 당국은 실제 시행을 포함하여 그들 업무와 관련된 국제인권법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국경에서의 일상적인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국경업무 담당자의 인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경에서 요구되는 인권과 성평등 교육 자료를 국제 기구,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제작해야 합니다.

9. 국경당국과 국경에서 활동하는 민간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모든 역량 강화 조치들 중에서 인권 및 성평등 교육이 주류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교육은 국경당국이 새롭게 대두되는 쟁점에 대해 인권에 기반한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10. 입국심사 관련 실습에서 금지된 근거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국경 당국의 모든 훈련 중에서 비차별 원칙이 주류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특히 외국인 혐오, 인종주의, 인종차별 및 관련 편협성을 드러내는 것을 포함하여 이주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11. 이주자에게 부적절한 부상을 야기시키지 않고, 국제 인권법 및 관련 모범 사례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절한 무력 및 장비를 갖추어서 효과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경업무 담당자에게 실질적인 상황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경업무 담당자는 불필요하고 적절치 못한 무력을 사용하는 그들의 동료를 멈추기 위해서 상황에 개입하도록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12. 국경에서 특정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이주자를 적절하게 식별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경업무 담당자의 민감성을 높이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어떤 이주자들은 인신매매자, 밀입국자 혹은 공무원을 포함한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해 힘들고 위험한 이동 수단 또는 학대 등으로 인해 광범위한 위험에 불가항적으로 노출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이주과정 전체에 걸쳐 그들의 보호와 지원 필요성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국경당국이 인지해야 합니다.

### 모니터링 및 관리 책임

13.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국경업무 담당자가 받는 인권교육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14. '법 집행관 UN 행동강령' 을 포함하여 국제 인권 기준 및 모범 사례에 근거하여 국경업무 담당자에 대한 구속력 있는 행동 강령을 개발하고 채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 강령은 예상되는 행동 기준과 그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15. 국경업무 담당자 및 그 밖의 다른 행위자가 자신의 고용상태 혹은 동료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인권에 반하는 동료의 행위에 대해 관계 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료들에 의해 불만이 제기된 경우 공정한 청문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16. 인권 규범 및 기준에 의거하여 정당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도록 국경 감시장비(CCTV 등)의 사용을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침해로 줄일 대안이 있음에도 사생활 권리를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부적절하게 정보를 수집, 저장 혹은 공유하는 것은 아닌지 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17. 부패, 강탈 및 착취에 관한 모든 사례를 조사하고 기소함으로써 국경 직원들의 인권침해 관행을 방지하고, 국경에서 국경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이주자들이 비용을 지불

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18. 국경업무 담당자 및 민간 행위자에 의해 자행된 과도한 무력 사용과 폭행, 강간 및 다른 형태의 성폭행, 고문, 가혹행위 및 그 밖의 인권 침해와 학대 등에 대한 보고에 대해, 이러한 사례의 원인을 파악하고 제재 혹은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사례에 대한 신고, 조사, 기소 및 판결 정보를 광범위하고 세분화하여 수집해야 합니다.

19. 국경업무 담당자의 인권 이행 실적과 관련하여 모범 사례를 추천, 보상 및 전파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 지침 4: 구조 및 차단 상황에서 의 인권 보장

국가 및 국제기구와 시민사회단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sup>6</sup>:

###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보장

1. 국제인권 책임과 난민법 의무, 그리고 국제해상법 및 그 밖의 관련 규범에 따라, 국경에서 이주자를 구조하는 과정 및 절차를 개정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2.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은 이주자가 구조 신호를 보내고 구조될 수 있도록, 위험한 이주 경로에는 구조 신호등을 설치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3. 구조업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국경당국 (해안 경비원, 정부간 기관 포함)에게 그들의 최우선 업무로 생명과 안전에 임박한 위험을 없애고, 구조된 모든 사람의 인권, 안전 및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이 법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금방이라도 닥칠 듯한 사망 위험에 처한 사람과 국경에서 특정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이주자를 신속하게 식별해야 하며, 해상에서 구조된 사람들을 위해서는 선박 내 가능한 범위에서,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4. 개인 선박 선장에게 국제 해상법, 국제 인권법 및 그 밖의 관련 규범에 따라 도움을 제공하고, 재난에 처한 이주자를 구조하고, 가장 인접한 안전한 장소로 구조한 사람을 하선하는 등 그들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해상에서 재난 상황에 처한 이주자를 구조하는 개인 선박 선장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하고, 더불어 이주자를 구조하면서 입은 경제적 손실의 보상도 고려해야 합니다.

5. 국경 관리 활동 중 국경에서 모든 이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포함한 인권의 존중, 보호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를 취하도록 합니다. 국가는 자의적 혹은 집단적 추방을 포함하여 위험한 차단 조치를 철저히 방지해야 합니다.

<sup>6</sup> 적용 가능한 국제법 그리고/혹은 관련 국내법에 따른 의무에 대한 침해 없이

6. 출발 전 심사와 국가간 이동수단에 대한 접근 결정과 같은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사설 운송 회사와 민간 행위자에게 책임성을 부여하고, 불법적으로 거부된 운송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행동 기준과 그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를 제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민간 행위자를 위한 인권 기반 행동 강령의 채택을 개발하고 장려해야 합니다

### 구조 역량 강화

7. 생명과 안전을 포함한 인권을 보호하고, 이주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으로부터 구조하거나 그 상황을 차단시켜 이주자를 벗어나게 하고, 특별한 보호 및 지원 요구를 처리하는 것이 국경 당국의 최우선 의무임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국경 당국에게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이주자 처우 관련 정책과 지침을 요약한 안내 카드 또는 팸플릿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 상태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8. 명확하고 인권에 기반한 목적으로 국경 당국이 구조 작업을 철저히 계획하여, 위험을 무릅쓴 행위가 수행되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계획은 적절한 인원과 관련 업무 담당자, 필요한 운송 수단, 응급 의료 장비, 식품 및 물 공급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9. 국제 인권법, 국제 해양법 및 그 밖의 관련 규범에 의거하여 모든 국경에서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조 서비스(연안 국가의 항해 중 수색 및 구조(SAR) 포함)를 구축, 운영 및 유지해야 합니다. 구조선은 대규모 인원이 도착할 경우를 포함하여, 이주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장비 및 보급품을 갖춰야 합니다.

### 구조 및 차단 활동 중 위험으로부터 보호

10. 강제송환 금지 및 연쇄 혹은 간접 강제송환 금지원칙이 국가의 관할권 또는 효과적 통제를 행사하는 모든 장소와 영역 밖까지 적용됨을 국경업무 담당자에게 인식시키고 교육해야 합니다. 모든 국경 관리 조치에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용적인 지침을 개발하고 유포해야 합니다. 영해, 공해 및 이후 상륙 시 발생하는 구조 및 차단상황의 맥락에



서, 이주자들은 그들의 안전과 인권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는 장소에서 구조되고, 이들의 하선이 강제송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11. 국경업무 담당자는 구출된 혹은 차단된 상황의 모든 이주자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형식으로 그들의 권리와 영사 지원을 받을 권리 (이주자가 원할 경우) 등이 포함된 접근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경업무 담당자는 난민 신청자 및 망명자 뿐만 아니라 비정규 이주자, 성소수자 등 어떤 집단이 그들의 인지 및 사전 동의 없이, 영사 당국의 주의를 불러 일으켰다면 특정 위험에 노출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12. 이주자의 사진, 신고서, 개인 정보 및 소지품은 국제 인권법, 특히 개인 정보보호 및 사생활 권리에 따라,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만 취득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 조정 및 협력

13. 이주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것이 조난 상황인지,

가장 근접한 안전 장소와 안전 항구는 어디인지에 관해 국내 및 국가간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해상에서, 이주자가 하선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분쟁은 국제 인권법 및 국제 난민법, 특히 생명권 및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14. 국제 인권법, 국제 해양법 및 그 밖의 관련 규범에 의거하여, 국가의 수색 및 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산, 장비 및 기타 지원 (예를 들어, 인원 파견 등)을 요청하거나 제공해야 합니다. 자산과 장비가 적절하고 인권에 기반한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교육이 제공되고 그것의 사용이 모니터링 되어야 합니다.



15. 선박 운항 협정 및 합동 해안 순찰 등 국경에서 인권을 위협할 수 있는 구조와 차단에 대한 협력 협정 혹은 협의는 유보, 개정 및 수정해야 합니다.

### 모니터링 및 관리 책임

16. 구조 및 차단 활동 중 발생한 인권 침해는 그것이 역외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국경당국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의도적인 구조 실패를 조사하고 적절하게 제재될 수 있도록 자료 기록 장비가 사용됩니다.

## 지침 5: 즉각적인 지원 맥락에서의 인권

국가 및 국제기구와 시민사회단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sup>7</sup>:

### 즉각적인 지원

1. 구조 혹은 차단 장소 또는 그 부근을 포함하여 필요한 장소에서 즉각적인 지원을 해야 하고, 해상으로 이동한 이주자의 경우에는 하선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 지원에는 특히 의료, 적절한 식품 및 음료, 담요, 의복, 위생 용품 및 휴식을 취할 기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개인 건강 및 의료 검진을 최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능숙한 의료 인력이 구조 또는 차단 장소, 혹은 해상 이주자가 하선할 지점에서 건강 검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경우 정신 건강 소견을 포함하여 추가 의료 치료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3. 국경에 도착하는 이주자들의 지위 혹은 상황에 관계없이 비차별적 기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모든 이주자에게 제공되도록 접수 절차를 수립 또는 개선시켜야 합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이주자가 국경에서의 지원 절차에 접근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이 보장되는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의 장애 정도를 식별하고 (지원 절차 접근에) 어려움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4. 지원 제공에 있어서 특히 국경에서 특정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이주자의 식별 및 위탁에 관하여, 국가 보호 기관, 국제 기구 및 시민 사회 단체와 협력해야 합니다.
5. 필요 시 훈련을 포함하여, 영사관 직원이 국경에서 자국민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임시접수시설에 관한 기준

6. 출입국에서 신원 또는 다른 필수 정보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이전 혹은 위탁을 준비하는 동안 머무는 임시 숙소에 반드시 필요한 기간

<sup>7</sup> 적용 가능한 국제법 그리고/혹은 관련 국내법에 따른 의무에 대한 침해 없이

보다 더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7. 모든 임시접수시설은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충분한 공간, 영양적이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식품, 깨끗한 물, 위생시설, 충분한 의료 및 법률 지원에 대한 접근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8. 임시접수시설의 직원은 신중하게 선발하고, 수용된 사람들의 다수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기본 언어 능력이 있어야 하며, 성별, 문화와

종교에 대한 민감성 등 적절한 인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모니터링 및 관리 책임

9. 접수 조건과 배정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 해당되는 경우 지원 및 접수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한 기소 등에 대해, 국가예방기구, 국가인권기관, 국제기구, 의회, 민간 사회단체 및 그 밖의 행위자들이 같이 협력해야 합니다



## 지침 6: 심사 및 인터뷰

국가 및 국제기구와 시민사회단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sup>8</sup>:

### 심사 과정

1. 각 개인의 상황 및 입국 이유를 파악하고 국경에서 특정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이주자를 식별하며 이들에게 적절한 주의가 주어질 수 있도록 국경에서의 심사 및 위탁 과정에 대해 평가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2. 국제 인권법에 따라 개인물품에 대한 수색 및 적절한 취급 등 사생활 보호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심사 과정을 평가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개인물품(여권 및 신분 증명서, 입국 혹은 체류 허가서, 영내 거주증 혹은 등록증, 노동 허가증, 금전, 휴대전화, 기타 개인적 문서 등)은 국제 인권법에 근거하고 명확히 규정되고 제한된

상황에서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국경 당국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된 모든 개인물품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발급되며, 가능한 신속하게 개인 물품을 돌려줘야 합니다.

### 정보 수집

3. 국경에서의 정보 수집 (특히 생체 정보)은 합법적 목적에 준하고, 정당하게 취득하며, 정확하고 현대식이며 제한된 시간 동안 보관되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처분되어야 합니다. 개인 정보를 통계 목적으로 저장할 경우에는 익명화해야 합니다.
4. 이주자 신원을 알기 위한 기술 (생체 정보 등)의 사용이 과도하게 기술에 의존하고 심사 과정에서 재량권 행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당 기술의 위험성, 한계, 인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국경당국의 교육을 병행하면서 기술을 소개해야 합니다.

<sup>8</sup> 적용 가능한 국제법 그리고/혹은 관련 국내법에 따른 의무에 대한 침해 없이

## 인권을 준수하는 입국제한

5. HIV 보균자, 임산부 혹은 장애나 성적지향 혹은 성 정체성 이유를 포함하여 차별을 기반으로 행해진 모든 입국 제한을 폐지해야 합니다. 입국 제한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국경에서의 신체 검사 혹은 조사가 금지되어야 합니다.

6.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 규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기반으로, 모든 주민 혹은 개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에만 입국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로 공중보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7. 전염병 검사를 포함하여 입국 혹은 체류 제한과 관련된 모든 신체 건강 검사는 자발적 검사 강조, 사전 동의 획득, 적절한 전/후 검사 상담 제공, 그리고 기밀 유지를 함으로써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주 정책의 일환으로 HIV, 결핵 및 임신과 같은 조건에 대해 강제적인 검사를 금지해야 합니다.

8. 입국이 거부된 이주자에게는 구두 및 서면으로 입국거부 이유와 법원 혹은 그 밖의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기관에 그들의 입국 거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는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 인터뷰

9. 인터뷰 지침과 절차는 인권과 존엄성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개발되어야 합니다. 인터뷰는 기본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사생활 보호가 되는 적절한 장소에서, 관할 당국이 위치한 국경에서 특정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이주자에게 적절한 주의를 준다는 목적을 명확히 하면서, 전문적이고 열린 태도와 위협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국경 당국이 이를 수행합니다.

10. 인터뷰를 수행하는 국경업무 담당자에게 적절한 교육 및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경업무 담당자는 강압적이지 않은 인터뷰 기법의 사용과 적절한 질문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11. 인터뷰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실력을 보유한 면접관을 활용, 혹은 인터뷰 대상자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인터뷰 절차를 손상시키지 않는 유능하고 공정한 면접관을 활용해야 합니다.

### 나이, 성별 및 기타 고려사항

12. 국경업무 담당자 및 인터뷰 대상자 모두를 위해서 이주자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 및 인식을 포함하여, 인터뷰 과정과 그 결과에 해로울 수 있는 고정관념 및 편견의 위험성에 대해 국경당국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13. 연령, 문화 및 성별에 따른 세심한 방식을 통해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언어 및 몸짓 언어 모두)와 적절한 서면 소통 방식을 사용하여 이주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경업무 담당자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14. 국경업무 담당자는 국경에서의 이주자의 상황과 관련된 특정 요청 사항에 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는

동시에, 여성이 취약하거나 (남성의 보호가 필요한) 주체성이 부족하다고 추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경업무 담당자는 가족그룹의 뚜렷한 인권상황을 식별할 수 있도록 여성 구성원들을 분리해서 소통해야 합니다.

15. 수화 통역사, 점자 문서 및 기타 관련 수단의 제공을 통해 장애인이 다른 이와 동등하게 면접 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합리적인 거처 제공을 보장해야 합니다.

16. 국경업무 담당자는 국경에서 성 소수 이주자의 상황과 관련된 특정 문제 및 요청에 세심하게 반응하고, 이주자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혹은 성별 표현과 관련된 어떤 판단도 언어 또는 몸짓 언어를 통해 표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7. 국경업무 담당자의 아동 면접은 오직 아동 신분에 관한 기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동행이 없는 혹은 홀로된 것으로 신원이 밝혀진 아동은 즉시 아동 보호 기관에 위탁하고, 적절히



© UN Photo/Luke Powell

훈련된 보육사가 참여한 면접을 진행해야 합니다. 성인과 함께 여행하는 아동은, 적절한 훈련을 받고 자격이 있는 직원과의 별도 면접을 포함하여, 동행하는 성인이 아동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모니터링 및 관리 책임

18. 국제 인권 기준에 의거하여 모든 이주자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경에서의 심사 및 인터뷰 과정에 대해 정기적이고 독립적인 모니터링 혹은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 지침 7: 식별 및 위탁

국가 및 국제기구와 시민사회단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sup>9</sup>:

*국경에서 특정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이주자의 식별 및 위탁*

1. 관련 정부 부처, 국가 인권 기구, 국제 및 시민사회단체 간의 공공 위탁 기구 및 통신 채널을 구축 혹은 강화해야 합니다. 국경 당국은 위탁 절차를 활용하도록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포함된 정보 및 시설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2. 국경업무 담당자가 국경에서 특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이주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식별하고 위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침 및 표준화된 절차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런 지침 및 절차는 관련 국가, 국제 및 시민 사회 단체와 협력하여 개발해야 합니다.
3. 수화 통역사를 포함한 유능한 통역

사,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자, 의료 서비스 제공자, 홀로된 아동 및 기타 아동을 위한 후견인과 같은 관련 서비스 제공자가 국경에 주둔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4. 국경에서 특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이주자를 확인하고 그들의 위탁을 책임지는 국경업무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경에 인권 전문가 부서 설치 또는 전문가 명부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5. 입국 시스템 규정은 망명 신청자가 망명을 신청할 권리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망명 절차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6. 임산부, 신생아 그리고/혹은 모유 수유 산모와 관련한 조치에는 산모 건강 서비스, 산전 및 산후 관리, 응급 산부인과 진료, 성 및 생식기관에 관한 건강 정보 및 서비스의 이용 등이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sup>9</sup> 적용 가능한 국제법 그리고/혹은 관련 국내법에 따른 의무에 대한 침해 없이

7. 아동을 즉각적으로 식별하고 아동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아동으로 대우받으며 적절한 경우 정확한 나이 확정 절차에 대한 접근이 주어지고, 후견인을 지정, 그리고 아동 보호 기관 혹은 기타 관련 서비스에 위탁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나이 확정 절차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고, 신속하고, 아동 친화적이면서, 성별을 고려하되 종합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아동 보호 공무원 혹은 관련 전문 지식 및 교육을 충분히 받은 공무원이 수행해야 합니다. 결과는 나이 평가를 받는 아동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독립된 기관을 통해 아동 여부 결정에 항소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8. 성폭력 및 성별 기반 폭력을 포함하는 고문, 학대,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대우, 폭력 및 정신적 외상을 겪은 생존자가 적절하고 유능한 의료 및 심리 사회 서비스를 소개받을 수 있게 보장하며, 국경에서 취해진 모든 조치는 재-정신적 외상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정보 제공

9. 식별 후 그에 따른 위탁 절차 기간 동안 그들의 권리와 의무, 미 이행 시 결과와 이용 가능한 구제책 등에 관한 정보를 이주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즉시 알리는 것을 보장하는 절차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10. 최신 연락처 정보 및 해당 기관과 연락이 가능한 수단을 포함하여, 이주자에게 법적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국내기관 및 국제기관에 관한 정보를 이주자에게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관련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모니터링 및 관리 책임

11. 이주자에게 적절한 보호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해 조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보호 및 지원 서비스의 접근을 방해하는 국경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조사와 적절히 징계 처분을 취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 지침 8: 구금의 지양

국가 및 국제기구와 시민사회단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sup>10</sup>:

### 자의적인 구금의 금지

1. 구금을 반대하는 법률상의 추정이 확립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구금을 대체할 인권 기반의 대안적 조치를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한이 완화된 대안적 조치가 고려된 장소에서 적법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구금이 최후의 수단으로 시행됩니다.
2. 국경(국경주위영역 혹은 운송수단 포함)에서 행해지는 모든 자유의 박탈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고, 모든 구금의 이유 및 필요하고 적절하게 제한된 범위와 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구금의 이유를 이주자에게 설명함으로써 자의적인 구금을 방지해야 합니다.
3. 국제 인권법에 준하여, 구금에

대한 대안이 없을 때에만 한정된 합법적인 목적에 국한하여 구금이 부과되도록 국경에서는 이주자를 개별적으로 심사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4. 모든 자유의 박탈에 합법성, 비례성, 필요성의 원칙이 고려되고 구금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과 비례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사법적 권한과 감독, 항소 가능성 및 법률 지원을 포함하여 구금에 대한 절차적 안전장치가 수립되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5. 잠정적으로 무기한 혹은 장기 구금에 이를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사람은 이런 유형의 자유 박탈을 당하지 않도록 무기한 구금을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용인하는 모든 법률 조항을 폐지해야 합니다. 추방할 수 없는 모든 이주자, 무국적 및 이전 출신국가 혹은 거주 영역에서 입국이 거부된 사람, 출신국가 혹은 거주국가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임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합니다.

<sup>10</sup> 적용 가능한 국제법 그리고/혹은 관련 국내법에 따른 의무에 대한 침해 없이

6. 아동 혹은 부모의 이주 지위, 비정규적 입국 또는 체류(석방 포함)를 기준으로 아동을 구금하지 않도록 법률적, 정책적, 관행적으로 보장하며, 필요 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구금을 대체할 인권기반, 비구금 형태의 지역사회적 대안을 채택해야 합니다.

## 구금의 조건

7. 구금 시설의 조건은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과 구금 조건에 관한 모든 관련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8. 구금 시설의 직원은 신중하게 선발하고, 인권 및 성별에 대한 훈련 뿐만 아니라 관련 문화와 종교 관행에 대한 훈련, 그리고 구금된 이주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언어 기술 등을 교육받아야 합니다.

9. 행정적 구금 상태인 이주자는 적절하고 적합한 시설에 구금되며, 혐의 있는 혹은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자와 함께 구금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0. 만약 남녀가 같은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면 남과 여는 분리되어야 하고 적절한 수의 남녀 직원을 채용하여 구금 시설 근무자 명단에 올리고 여성 구금 시설에는 항상 여자 직원이 상주하도록 해야 합니다.

11. 아동의 구금이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부득이한 분리 사유가 없다면 아동은 그 가족 구성원과 같이 수용되어야 합니다; 미 보호자 아동은 관계성이 없는 성인과 같이 수용되면 안됩니다; 그리고 모든 아동은 적절한 의료 서비스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 기관이 아닌 아동보호 기관이 아동에 대해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12. 이주자는 구금으로 인한 폭력, 학대 혹은 육체적, 정신적 혹은 성적 학대의 위험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구금 중 신체적 및 정신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때, 당국은 구금에 대한 대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 인권 기반 지원에 대한 접근

13. 구금된 이주자는 적절한 의료 및 건강 서비스에 제한조건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연령, 성별, 문화 및 언어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구금된 이주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 주된 역할인 전문가 자격을 갖춘 직원에 의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산전 및 산후 관리, HIV 치료, 정신 건강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14. 구금된 이주자에게는 인신 보호에 대한 권리 행사, 구금의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 망명절차, 인권 침해 및 학대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절차 접근 등 모든 필요한 부분에서 통역 서비스 뿐만 아니라 유능하면서 독립적인 법률 지원을 조건 없이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15. 동행이 없는 아동에게는 모든 형태의 의사결정에서 아동을 도울 수 있는 유능한 후견인을 지원해야 합니다.

16. 영사 지원에 관한 정보, 연락 정보 및 그러한 연락 목적을 위한

전화 또는 그 밖의 의사소통 수단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구금된 이주자와 영사 또는 외교당국간의 연락을 용이하게 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영사 지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망명신청자 및 난민, 비정규적 이주자, 성 소수자 등과 같은 집단에 대해 이들의 인지 및 사전동의 없이 영사 당국의 주의가 야기됨으로써 이들에게 제기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정보에 기반한 당사자의 자율적 동의에 의하거나 혹은 요청된 경우에만 영사 당국에 연락해야 합니다.

17. 구금된 망명신청자를 위해 공정하고 실효적인 망명 절차에 시의적절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8. 국가 인권기구, 관련 국제기구, 시민 사회단체, 그 밖에 법률 조항에 따른 단체 및 구금된 이주자를 지원하는 단체 등에 대한 접근과 연락을 촉진하고, 이런 기관에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이주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모니터링 및 관리 책임

19. 국가예방제도, 국가인권기구, 국제기구,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의 단체는 구금된 이들과 구금 장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주 구금 장소에서 구금에 대한 독립적 모니터링 및 평가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20. 구금 장소에서의 폭력, 성적 학대 혹은 그 밖의 학대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고 기소하며, 재발 방지를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및 성 소수자가 그런 학대를 신고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합니다.



© UN Photo/Marco Dormino

## 지침 9: 인권기반 송환 및 추방

국가 및 국제기구와 시민사회단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sup>11</sup>:

인권 기반 송환 및 추방

1. 역외를 포함한 국가의 관할권 또는 실질적인 관리를 행사하는 모든 영역에서 송환은 오직 국제법과 정당한 절차상의 보증에 의거하여 실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강제송환금지 원칙 그리고/혹은 집단추방금지 원칙을 위배하는 자의적이거나 집단적인 추방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 자발적 귀환

2. 이주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접근 가능한 형태로 자발적 귀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강제 송환에 앞서 자발적 귀환을 우선적으로 촉진합니다. 적절한 시민사회단체가 관련 정보 제공에 개입되어야 합니다.

3. 자발적 귀환 절차에 대한 모든 동의는 (그들의 선택에 의한) 완전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무기한 구금 혹은 부적절한 조건의 구금 가능성과 같은 어떤 강압도 없어야만 합니다.

### 강제출국 명령

4. 송환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이주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인 강제출국 명령에 의거하여 오직 권한이 있는 업무 담당자에 의해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법 및 국제인권규범, 특히 자의적 혹은 집단추방금지 원칙과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따라 적절한 정당성을 갖추고 개인적 상황을 고려한 경우에만 내려져야 합니다.

5. 이주자가 강제출국 명령의 근거, 강제출국 명령의 집행, 강제출국 명령의 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절차,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기에 적합한 기간, 그리고 불이행의 결과를 포함한 그 밖의 관련 정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sup>11</sup> 적용 가능한 국제법 그리고/혹은 관련 국내법에 따른 의무에 대한 침해 없이

6. 이주자에게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박해 또는 그 밖의 심각한 인권침해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곳으로 송환되고, 재입국 하고서, 향후 재 송환 될 가능성이 있다면 강제출국 명령에 대한 구제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7. 송환 절차 전반에 걸쳐 후견인이 아동과 동행하고, 가족 혹은 후견인의 신원을 확인하며, 아동이 돌아가는 국가에 아동을 위한 수용 및 돌봄 조치가 분명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은 적절하고 참여적인 절차를 통해 송환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명된 경우에만 송환되어야 합니다.

### 강제출국 전 구금

8. 국제인권법에 따른 합법적이고 불가피한 강제출국 전 구금인지, 각각의 개별 사례별로 비 구금형 조치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결정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금된 개인에게는 접근 가능한 형식과 이해 가능한 언어로 강제출국 전 구금 명령

에 대한 근거, 명령에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구제절차, 법적 지원 접근 방법 등을 알려야 합니다.

### 재입국

9. 귀환 절차는 고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떠날 수 있는 권리로, 아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고, 귀환자는 해당 국가와의 합의 하에 돌아가고자 하는 국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 국경업무 담당자와 이주자는 떠날 국가와 귀환 도착국가의 서류 요건을 인지하고, 필요 시 귀환을 용이하게 하는 문서를 발행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11. 귀환 절차 도중 국가간 협력에 관한 모든 정보의 비밀을 보장해야 합니다. 귀환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신원 확인 및 문서정리는 비정규적 이주 지위, 망명 신청, 건강 상황, 장애 여부와 HIV감염 여부,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 등에 관련한 정보에 대해, 비밀 보장에 관한 국제법상 규정에 따라 마련되어야 합니다.



12. 귀환하는 국가의 안전한 장소로 귀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수 준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경 사이의 소위 말하는 “무인지대”로 추방하는 것 같이, 그들의 안전 혹은 인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궁핍한 상황이나 열악한 환경으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환 도중 적절한 의료 서비스, 식품, 음료 및 위생 시설의 부족으로 이주자의 인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귀환은 밤에 실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협력 국가는 귀환 출발국 또는 도착국의 범죄 집단에 의한 보복으로부터 귀환하는 이주자 및 그들의 가족을 보호해야 합니다.

13. 수용국가의 국경업무 담당자가 아동을 어떻게 대할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아동을 이들에게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들은 송환 절차 동안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반자가 없거나 홀로된 아동은 적절한 돌봄 및 양육 준비가 실행되지 않거나, 귀환하는 국가에서 가족 구성원이 찾아졌다는 확인이 없으면 송환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 강제 추방

14. 집단적 추방 금지에 관한 국제법에 비추어, 이주자 집단에 대한 추방은 적법한 절차상의 요건을 보장해야 하는데, 각 개인별로 추방을 해서는 안 되는 모든 상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고려해야 합니다.

15. 이주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 혹은 귀환 절차의 속행이 이주자 혹은 귀환 조치에 있는 사람의 안전과 존엄성을 위협하는 경우, 귀환절차는 완료되지 않고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16. 송환을 수행하는 국경업무 담당자 중 최소 한 명이 이주자와 같은 성별의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접근 가능한 형태의 그들이 이해 가능한 언어로 이주자와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선별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통역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17. 이주자가 안전하고 품위 있게 송환될 수 있도록 국경업무 담당자를 신중하게 선발하고 적절하게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합법적이고 엄격히 필요하며 적절한 그리고 이주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무력이나 강압적 수단의 사용과 훈련 실습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18. 실제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이주자의 저항에 사용된 모든 형태의 신체적 구속은 그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엄격하고 필요하면서 적절해야 합니다. 이주자의 코 또는 입을 막거나, 질식할 위험이 있는 자세를 강요하는 것 같은 모든 강압, 구속 혹은 무력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19. 의학적으로 여행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아니라면 어떤 이주자도 송환되어서는 안 됩니다. 알려진 병이 있거나, 의료적 치료가 필요하거나, 혹은 구속 장비의 사용이 예측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의료 검진을 하여 여행 적합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20. 추방을 용이하게 하는 안정제,

진정제 또는 그 밖의 약물사용 같은 의학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조치나 대우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송환에 대한 국가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이주자 측에서 의료 요구가 있는 경우, 송환 예정인 각 개인들의 사전 동의와 의학적 결정을 기반으로, 그들의 송환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만 약물 투여를 해야 합니다.

### **모니터링 및 관리 책임**

21. 송환 전 절차, 송환 과정, 수용 국가에서의 이주자 접견이 고문, 학대 및 강제송환 금지에 관한 국제 인권법과 규범에 따라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인 모니터링이 보장되고 촉진되어야 합니다.



22. 인권 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이주자들에게 알리고, 송환 절차 중 권리가 침해된 사람은 송환 절차 도중에 또는 이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연락을 취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해당 국가로 귀국하거나 화상 연결을 통해) 인권을 침해한 사람 또는 범죄 가해자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고 송환국가 내 혹은 송환국가를 벗어나 효과적인

구제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권침해행위가 감독 관청에 보고될 수 있도록, 송환 명령을 수행하는 담당자는 이름 또는 개인적 번호를 이주자들에게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하고, 마스크 착용 또는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외모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 지침 10: 협력 및 조정

국가 및 국제기구와 시민사회단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sup>12</sup>:

*협력을 위한 체계*

1. 인권에 따른 협력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는 모든 핵심적 국제인권조약<sup>13</sup>, 난민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 1954년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 1961년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 해상에서 구조된

사람의 처우에 관한 국제 규범과 지침,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에 관한 유엔협약과 인신매매 및 이주자의 밀입국에 대한 추가 의정서, 이주노동자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 노동기구(ILO) 협약 등에 서명, 비준 그리고 이행되어야 합니다.

2. 국내, 양국간,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 관련 행위자들에게 인권에 기반한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심이 되는 권력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경 관리에 관한 조정 체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3. 인권에 기반한, 평등하고, 품위 있는 그리고 합법적이면서 증거 기반의 이주와 국경관리 조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 재결합 목적 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 수준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현실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잠재적인 이주자가 충분히 정규적인 이주 경로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과 자원의 조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sup>12</sup> 가능한 국제법 그리고/혹은 관련 국내법 조항 하에 그들 의무에 대한 침해 없이

<sup>13</sup> 10개의 핵심적 국제인권조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과 그 선택 의정서, 모든 이주 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강제 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인권 보장

4. 양국간, 지역 및 국제적 협력 협정, 합의, 법 및 정책은 국제 인권법에 준하여, 국경에서 이주자의 인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명백하게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양자간 혹은 지역 협력 협정, 합의 또는 메카니즘, 특히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 인권 규범을 위반하는 협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경 관리 협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국경에서 인권 존중, 보호 및 이행을 입증할 수 없는 국가와 협정이 유지되거나 체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6. 인권법과 규범에 따르지 않는 모든 협력협정, 선박운항협정, 합동 순찰, 정보공유협정 그리고 역외 관할권의 국경 및 공항 연락담당자의 배치에 관한 협정을 중단하고, 수정하며 개정해야 합니다.

7. 국경 및 공항 연락 담당자 협정, 국경간 합동 작전팀을 포함한 운영 협정 및 합의는 명시적으로 인권 보장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인권법 및 규범을 위반하거나 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합동 작전은 즉각 종료되어야 합니다.

## 다자간 이해관계자 조정

8. 국경 관리 협정 및 합의의 채택, 수정 및 이행을 함에 있어서 인권 기반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가 인권기구, 국회의원, 국제기관, 이주자 공동체, 시민사회단체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야만 합니다.

## 정보 수집 및 보호

9. 국경에서 이주에 관한 인권 기반 관리와 관련하여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교환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관, 시민사회단체, 다른 국가, 그 밖의 관련 행위자들과의 협력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10. 정규적이거나 비정규적인 국경 통과, 밀입국과 인신매매, 국경에 접근하거나 국경을 통과하는 시도에서 이주자 사망 사례, 국경에서의 차별, 폭력 및 학대 신고 등에 관한 국경 관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표준화되어야 합니다.

11. 이민 집행 기관과 공공 서비스 사이에 '방화벽' 설정을 포함하여, 국가간 및 국내 정보 공유 및 교환

협정에는 명시적인 정보 보호 보증을 포함해야 합니다.

### 모니터링 및 관리 책임

12. 다른 국가 및 기타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수행하는 국경 관리 작전에 관련된 모든 국경업무 담당자에게 적용되는 독립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Palais des Nations

CH 1211 제네바 10 – 스위스

전화번호 : +41 (0) 22 917 90 00

팩스 : +41 (0) 22 917 90 08

[www.ohchr.org](http://www.ohchr.org)

표지 이미지: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유럽 연합 에코-라벨을 수상한 종이로 제작,  
Reg.nr FI/11/1, UPM 제공.



Made of paper awarded the European Union Eco-label, reg.nr FI/11/1, supplied by UPM.